

June 18, 2024

중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2024. 4. 26. 중국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이하 “**현행법**”, 2007. 7. 1. 시행)을 개정할 것에 관한 입법예고안(이하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초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대한 첫번째 개정법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감독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위반시의 처벌 수준을 높였고, 조사협조 의무 등이 있는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반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항을 추가한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등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이나 국민에게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중국 금융기관이 임의로 이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내용대로 확정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는 현재 알 수는 없으나, 개정 초안은 중국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입법 방향 및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니,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비금융기관이나 일반 업체, 개인들도 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자금 세탁 규제 범죄 유형의 확대

개정 초안은 “자금세탁방지”의 정의를 규정할 때 그 적용 범위를 현행법의 7가지 특정 범죄 유형¹을 열거하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속이는 자금세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범죄 유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2조).

1 마약 범죄, 범죄 조직 성격의 조직 범죄, 테러 범죄, 밀수 범죄, 횡령 및 뇌물 범죄, 금융 관리 질서 파괴 범죄, 금융 사기 범죄(현행법 제2조)

또한 현행법 제36조는 테러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제2조에서는 이를 테러리즘의 자금 조달 활동을 예방 및 억제함에 있어 동 법이 적용된다고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테러조직의 자금 조달 단계부터 시작하여 테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비금융기관의 조사협조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은 해당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를 (i)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체, (ii) 위임을 받아 고객을 위해 부동산 양수도를 처리하고, 자금,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대리 관리하며,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과 사업실체의 사업 양수도를 대리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공증기관, (ii) 귀금속, 보석 현물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상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제60조).

3.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강화

개정 초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중국인민은행)가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감독 및 검사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초안 제19조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아래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기관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2) 금융기관 직원에게 질문하여 조사 대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3) 조사 대상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파일 및 문서를 열람 및 복사하고 이전, 은닉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봉하여 보관할 수 있음.
- 4) 금융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을 검사하고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추출 및 보관할 수 있음.

또한, 개정 초안 제20조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동 법 및 관련 관리규정을 집행한 상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아래 조치들도 취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업무 활동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2)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이슈사항에 대해 감독관리 차원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 3)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 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4. 일반 업체 및 개인의 의무 강화

개정 초안은 특정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특정 비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업체 및 개인에게도 세탁방지 의무 및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개정 초안 제38조에 따르면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특별 명단²에 기재된 대상에 대해 세탁방지 특별 예방 조치(특별 명단에 기재된 대상 및 그 대리인, 이들의 지시를 받은 업체 및 개인, 이들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자금 이체 및 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초안 제17조에 따르면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수익 소유자³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고 보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사실대로 제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이 정부부서와 협력하는 메커니즘 강화

현행법 제18조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 시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에 고객의 신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제31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 공안 기관 및 시장감독관리, 민정, 세무, 이민 관리, 통신 관리 등 부서를 통해 법에 따라 고객의 신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처벌 강화

개정 초안은 현행법에 비해 처벌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 및 개정 초안의 위반 행위 유형과 처벌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² 국가 반 테러 주무부서에서 인정 및 공고한 테러 활동 조직 및 개인 명단,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통지 중 특정 금융 제재 대상 조직 및 개인 명단,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에서 인정 또는 해당부서가 기타 관련 국가 기관과 연합하여 인정한 중대한 자금세탁 리스크가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명단

³ 개정 초안 제61조에 따르면 '수익 소유자'란 최종적으로 법인이나 비법인 조직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비법인 조직의 최종 이익을 누리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위반 행위 유형	현행법에 따른 처벌	개정 초안에 따른 처벌
(현행법 제31조 제1항의 1~3항, 개정 초안 제49조)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제도 및 전문기관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등 경우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 관련 사안을 담당한 이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이하 "책임 인원")에 대해 기율처분 ⁴ 을 함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처벌을 내리고, 20만~200만 위안 과징금을 병과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현행법 제31조 제1항의 4~6호, 개정 초안 제50조) 금융기관이 신분이 불명확한 고객을 위해 계좌 개설, 가명 계좌 개설, 비밀유지 의무 위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와 조사를 거절하거나 비협조, 조사 자료를 제공에 비협조 또는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경우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한 경우 책임 인원에 대해 1만~5만 위안 과징금 부과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처벌을 내리고, 50만~500만 위안 과징금을 병과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현행법 제32조 제1항, 개정 초안 제51조) 금융기관의 고객 신분 확인, 고객 신분 및 거래 기록 보관, 큰 금액 또는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한 경우 20만~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책임 인원에 대해 1만~5만 위안 과징금 부과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20만~2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현행법 제32조 제2항) 금융기관의 상기 행위로 인해 자금세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초안 제52조) 금융기관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소득 및 그 수익이 본 기관을 통해 은닉되거나 숨겨지게 하였거나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 50만~5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책임 인원에 대해 5만~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휴업 정돈 및 영업허가증 강제 말소 처벌을 내림	- 기한부 시정 명령 - 관련 금액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만~1,0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관련 금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관련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경

4 「금융위법행위처벌방법(金融违法行为处罚办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동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기율처분은 경고(警告), 과실 기록(记过), 중과실 기록(记大过), 강등(降级), 면직(撤职), 유용관찰(留用察看, 일정 기간 관찰 후 해고 여부 결정), 해고(开除)를 포함합니다.

		우 금융기관에 대해 휴업 정돈 및 영업허가증 강제 말소 처벌을 내림
(현행법 제32조 제3항) 금융기관이 상기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초안 제53조) 금융기관이 상기 제49조~52조를 위반하는 경우 ⁵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책임 인원에게 기율처분을 내리도록 하거나, 책임 인원의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금융업종 내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제49조~제51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책임 인원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또는 2만~20만 위안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책임 인원의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금융업종 내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제52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책임 인원에 대해 20만~100만 위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책임 인원의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금융업종 내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개정 초안 제47조, 제54조) 외국 국가 또는 조직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거나 또는 중국과 합의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직접 중국 금융기관에 고객 신분 자료,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국 내 자금 및 자산을 압류, 동결, 이체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이를 따르면 아니 되고, 즉시 국무원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이 해당 의무	- 해당 사항 없음	- 50만~5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적인 경제손실의 1배~5배의 과징금을 병과 - 책임 인원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또는 5만~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병과

5 책임 인원이 자신이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여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

를 위반하여 임의로 행동하는 경우		
(개정 초안 제55조 제1항)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및 개인이 개정 초안 제38조에서 규정한 세탁방지 특별 예방 조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 기한부 시정 명령 - 경위가 엄중한 경우 2만~20만 위안 과징금 부과
(개정 초안 제55조)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수익 소유자 정보 제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수익 소유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 위안 과징금 부과 -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허위 또는 정확하지 않은 수익 소유자 정보를 제출하거나 또는 수익 소유자 정보를 제때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20만 위안 과징금 부과

II. 시사점

개정 초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에 대한 실사,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등 면에서 보다 높은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제시했고, 관련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프로세스 등을 다시 검토하여 개정 초안이 정식으로 통과된 이후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 정부 등의 제재성 조치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비금융기관'으로 정의된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중개업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공증기관, 귀금속 및 보석 현물 거래상 등도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객 실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 업체와 개인도 금융기관의 실사에 협조해야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작업 협력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권대식

변호사

T 86.10.6461.3650

E daeshik.kwon@bkl.co.kr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

T 86.10.6461.3653

E jingnan.jin@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